

STCW協約의發效와電氣通信主管廳의課題 —電波管理法의改正促求を中心으로—

83316

王志均
光云大學 電子通信工學科

A PROPOSAL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KOREAN RADIO REGULATORY ACT
On the occasion of preparing for the STCW Convention

Ji-Kyoon WANG
Dept. of Telecommunication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begins with investigations of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London(STCW) which will be put into force on and after 28th April 1984.

Author tried to confirm those common points on requirement of the qualifications between the radio officer regulated in the STCW Convention and radio communication operator's general certificate in the 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Then, Japanese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is taken as a model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as Japan and Korea have many resembling aspects, especially legal and social aspects.

Therefore, as one of urgent tasks of Korean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preparing for the STCW Convention, I stressed on partial amendment of the Korean Radio Regulatory Act.

I. 序言

1. 問題의提起

STCW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London), 1984年4月28日 国際的に發効의 發生되는 바, 이의 국내施行을 위하여 交通部(海運港湾厅)에서는 그가主管하는 航海通信法의 改正에 努力하고 있다.

이協約의 対象에는 船長과 航海通信士(海上通信士) 및 외래 RADIO OFFICER(無線通信士官)도 있는 바, 通信事業者에게는 이中에 무선操作士官에 대한 要件의 評議와 더불어 이協約의 目的과 制定背景에도 注意가 集中된다.

一般的으로, 船舶의 無線通信士官은 船舶의通信士或者是 海員許狀의 所持者로서 海運港湾厅의 離掌所管이라고 보이고 있다. 그러나, 船舶의通信士가 通航時에서는 먼저 港務部長官으로부터 電波通信技師

(技能士或其等)의 國家技術資格手續을 獲得받음을 要하며, 併한 아니라 船舶의 設置되는 主管廳(RADIO STATION)의 許可와 檢查 및 運營等一切의 職務를 負担하고 있다.

따라서, STCW協約의 發效에 对備策은 交通部의 船舶通信法 改正뿐만 아니라 職務主管廳에 主管하는 電波管理法의 整備도 隨伴되어야 한 것으로 球視된다. 그로에도 不拘하고, 職務主管廳에서는 復去 10年間이以 계속되어오는 船舶通信의 甲級無線通信技師 這是자격을 丙級無線通信技師로 轉職或更換하는 始終을 積み得하고 있다. 이 理由로써 甲級無線通信技師의 不足를 衝突하고 있으나, 果然 甲級無線通信技師인가 或은 港運港灣厅長이 發給하는 甲種船舶通信士가 不足한 것인지는 疑問의 點을 有する 所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元來, 無線通信士(RADIO OPERATOR)는 國際電波通信協約의 附錄無線通信規則(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即下 RR의 2고 離掌已站)을 遵守

으로 하고 있는 바. RR는 1974년 GENEVA에서의改正에서, 「海上無線通信士」(一般級無線通信士) RADIOTELCOMMUNICATION OPERATOR'S GENERAL CERTIFICATE 制度를 新設하였다. 故, 이一般級은 從來의 船員과 不同 真이 다른지는 比較室明の中で 잘 알았다. 또한, 이一般級은 海上에서 航理內科으로 STCW規約내에 RADIO OFFICER의 要件와 近似성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一般級과 STCW의該當要件가는比較調査하여 接近真은 模索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適切한 無線通信士制度를 建立하고 旧態依然한 海上無線通信士자격輕減을 防止하는 行政의 違行되어야 한다. 特히 한通信施設拡充에만 偏重된 재신부이 航理政策의 要素에도 改革의 行進次을 促求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

2. 研究의範圍와 方法

(1) 研究의範圍

- ① 電波管理法내에서 最上級인 電波通信技術敎育限정과, 其他의 자격은 除外한다.
- ② 船舶安全管理法내에서 最上級인 甲種船舶通信士에 限정과, 其他의 자격은 除外한다.
- ③ STCW規約發效에 隨帶하여 船舶部長官의 電波管理法을 改正해야 하는 当局性(政府權威法以 遵守部職制)
- ④ 具体的의 電波管理法의 改正案와 备考由의 提示

- ⑤ 政策效果外 反論의 檢討
- (2) 研究方法

- ① 主要 文獻研究 (国内外의 法書, 論文, 短期刊行物, 或 其他)
- ② 事例研究方法と併進 (特に 実際成績의 研究, 公式會議의 経過, 或 其他)
- ③ 比較調査 (外國의 行政先例, 特히 우리外洋의 和合의 類似事例 일본국의 電波行政)

이어 細은 努力는 並으로 우리나라 船舶通信主管官의 資格을 示唆하여 政策의 更前に 日本 하여 真因에의 本研究를 試圖하였다.

II. 새로운 船舶通信士의 要件

1. STCW上의 RADIO OFFICER

(1) 背景 and 目的

近年의 海運構造의 变化로 便宜置籍船의 增加하여 이를 船舶乗務員의 質低劣은 安全運航에 亂向問題를 巯起하여 亂生 바. 特히 大型油槽船에서의 海難事故는 海上污染을 莫基하게 造成되였다.

이가 動機(原動)을 차지. 1979년 466名(韓正良等)는 1979年 6月4日 ~ 1979年 6月 15일에 Lorient에서 모여, 無線通信士培訓研修회를 가졌다.

이協約의 目的은 海上에서의 人命財產의 安全 and 海洋航行의 保護를 増進함에 있는 바. 为此으로서 船員의 訓練과 当直勤務을 強化하며 船員에게 提供되는 資格證明을 보다 明確히 정의로서 이후 4는 次이다. 따라서 通信士의 자격도 強化되고 있다.

(2) 具体的의 要件

- ① 最終限의 附加的知識 and 能力 (口頭對話與聽解能)
- ② 機械과 航海과 最新의 知識의 取得와 確因부에 对外和社 強制的最低要件
- ③ 安全을 保証할 船舶通信士當直勤務와 保守의 基本的準則과 運用上の 指針 (大議定)
- ④ 訓練의 開拓 勧告

(가) 初部 (海上에서의 安全을 保証할 船舶通信士의 訓練의 最終標準)

① 一般的知識 (身本適性 and 最新의 規則과 技術)

④ THEORY AND PRACTICAL

② RADIOTELCOMMUNICATION TECHNIQUE (MORSE包含)

③ 規規 (RR, SOLAS, STCW)

④ 外國語 (英語)

⑤ 船上實務

(나) 第二部 (無線電波測定裝置 및 附加의 無線通訊裝置를 通過하는 船舶通信士의 規則)

④ 直接印刷 and データ技術

④ 選取叫出 기법

④ FACSIMILE

② 衛星裝置 (無線通訊와 無線測驗의 技術)

④ RADAR

④ 無線船各用 COMPUTER

④ 双曲線시선

④ 吊繩測深裝置

④ TELEVISION

2. RR上의 一般級無線通信士

(1) 制定 and 経過

無線通信에만 依存하는 海上航行의 时代에도 電波工端發達에 따라 他方式로 增加되어 結局 高速度의 MORSE發送로 本 船舶通信士의 保守能力의 伸張性이 增大되였다. 1959年 英子 提案(WAC), 勘告18, 1963年 次議16, 1974年 RR上에 附載, 1976年施行의 経過에 由래 一般級無線通信士는 成文化되었다.

現在, 以下은 批准実施한 国家다 (括弧이 첨가).

英: 1970年, 西班牙, 法國, CANADA: 1972年

NEW ZEALAND: 1980年, 日本: 1983年

(2) 一般無線通信士의 試験基準比較

〈表-1〉 一級通信士와 1通의試験基準比較
(The Subjects of Examinations for 1st Class and General Class R/O)

級의 區別 分野 시험 과목	1 通 士	一 級 級	差 異 點
工 理 論 學 實 驗	(1) 電氣의 一般原理, 無線理論 (2) 移動業務用 各種 無線電信 및 無線電話 機器, 無線方向探知機의 運用 原理 및 調整 (3) 電動發電機, 壓電也等의 運用 및 油水 理論, 이들 모두의 修理實技	(2) 充分社, 電氣原理, 無線工學 및 電子工學 (2) 最新의 無線裝置, 海上用 無線電信, 無線電話 送受信機, ANTENNA系, 自動警報裝置, 救命艇等의 無線裝置 (3) 電動機, 同期發電機, 發電機, INV-ERTER, 整流機, 整流也等의 電源裝置, 無線航行機器(無線方向探知機包含)의 原理, 保守, 修理의 實技	電子工學
			最新의 海上用 機器
			電源裝置의 多樣化 및 具體化
運 通 信 實 驗 技 術 規 定 用 法 規 地 理 學 外 國 語	(1) MORSE CODE: 喇語 1分間當 20 語 및 普通語 1分間當 25語의 速度 에 외한 5分間의 正確社 送, 受信 (2) 無線電話에 외社 正確社 送受信 RR의 詳細社 知識, 無線通信의 料金 에 關社 知識, SOLAS의 知識	(1) MORSE CODE: 喇語 1分間當 16 語 및 普通語 1分間當 20語의 速度 에 외한 5分間의 正確社 送受信 (2) 無線電話에 외社 正確社 送, 受信 RR의 加減, 無線通信의 料金에 關社 知識, SOLAS의 知識	速度 低下 鉛音 “詳細”의 刪除
	世界地理, 特別 主要社 航路, 航空路 및 가장 重要社 電氣通信路의 充分社 知識	世界地理, 特別 主要社 航路 및 가장 重要社 電氣通信路의 充分社 知識	“航空路”의 刪除
	ITU業務用語中의 하나의 充分社 知識, 受驗者は 그 用語로서 口頭 및 書記에 依하여 滿足하게 意思를 表明할 수 있어야 한다.	ITU業務用語中의 하나의 知識, 受驗者は 그 用語로서 口頭 및 書記에 依하여 滿足하게 意思를 表明할 수 있어야 한다.	“充分社”의 刪除

3. RADIO OFFICER의 一般特點比較

(1) 職務

① STCW 上의 RADIO OFFICER와 RR 上의 一般級通信士는 모두 船舶의 通信係을 形成하는 것이다.

② 이 두 資格의 具備要件은 거의 同一이다.

(2) 職務要件

- ① 実習中 航船期間의 差異(1年 or 6개월)
- ② 자격 種別의 差異(RADIO TELEPHONE OPERATOR)問題解消, 電波管理法의 改正 등 分道而行의 球路問題

III. 電氣通信 主管方의 課題

1. 通信主管方의 職務

(1) 政府系且總裁(法)의 職務

- ① 交通部(運輸部): 海事部長官은郵便·郵便換, 郵便對營、電波管理 및 電氣通信
- ② 通航事務을 管理한다.

② 文化部(文化公報部)의 職務: 文化公報部長官은 文化、藝術、國内外의 事件調査、言論、宣傳、映報道外 放送에 관する 事務을 管理한다.

③ 文化部(文選部)의 職務: 文選部長官은 陸軍、航空、海事外 觀察에 관する 事務을 管理한다. 同僚부의 職務: 海事外 港灣運輸 및 建設의 海事 事務을 管理外에 하기 위하여 文選部長官 所屬下에 構成 港務處를 둔다.

註: RR의 1st定義中 「主管方」(ADM/ADMINISTRATION)이란: ITC 및 附屬元

規則을 执行하기 위하여 取締措置에 대처하는 責任은 並且 外는 政府의 機關이다. 그리고 之, RR에 基於 重視電航의 管理方의 職務은 電信部長官이다.

小结、無線放送局의 許可는 文化公報部長官의 合議을 要하며, 船員이 之가 船舶의 船代士는 海運港務長官의 業務許可도 있어야 하지만, 모든 重視電航의 主管方은 海事部長官이 諸多의 職務이다.

따라서, 無線放送局中 船代士의 文句 皆에 附屬부는 文句가 前置되는 諸多도, 이는 모두 重視電航 生生 重視電航 間의 之間으로 文句의 重視電航의 電氣通信의 電氣通信을 重視하는 重視이다.

- (2) STCW 上의 事件 檢討
 - RADIO OFFICER의 RADIO는 電波 또는 無線 這件이므로 우리 海事部長官이 管理의 職務이 당하는 職務이다. 具體的인 STCW의 該方事項은 下列로
 - ① 具體的인 事件中、最佳履行 附加的知識 및 訓練
 - ② “ 다음을 包含하 非常時의 無線艇外 事件의 提供”(例: 沿岸防護艇에 대한, 이어온 통신)
 - ③ 固定式以固定式或命令使用無線裝置의 操作
 - ④ 附屬外 裝置上의 無線機의 操縱
 - ⑤ 無線裝置의 保全 人命安全을 為す 防護
 - ⑥ IMO/MARPOL의 航行 無線通信
 - ⑦ 船舶通航의 関する 無線通信

- ⑦ 無線医療의 通信
- ⑧ 其他 (INTERCO 및 SMAN)에 関聯된 設備
- ⑨ 技能의 持續와 最新知識의 取得는 確固하게 하기 위한 強制的最低要件의 強化
- ⑩ 安全을 위하는 無線의 当直勤務에 係る 守護或其 基本的準守事項의 모두
- ⑪ 首次告의 是을 事項

다시 말하자, RADIO OFFICER의 職務中 "海上에서의 生活, 船舶医療 方式, 訓練"에는 모두 船舶部長官이 託付된다.

- (2) 國際法復位主義의 實行
- 電波管理法 力行條(國際法復位主義條): 구 제3자 통신장에 대해서 協約 些將 權限에 따로 制定이 있는 때에도 그 规定에 따른다.

電波管理法 力行條(國際法復位主義條): 전파에 관하여 係統에 따로 制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规定에 不拘하고 그 權限에 따른다. 어느의 制定이 基하여, 우리 船舶部에 대해서 RR이나 STCW를 優先적으로 遵守하는 球帶가 있다.

2. 電波管理法의 改正案

電波管理法은 우리나라 電波管理行政의 기본法律로서 無線局, 無線設備, 無線從事者 및 其他 電波에 관한 專門的, 技能의 事項을 規定하고 있으며, 空氣通航의 主管方인 航空部長官이 主管하고 있다. STCW의 RADIO OFFICER에 對應하고,同時に RR에도 對應하여, 其他 船舶의 通信長의 合理性를 期하기 위하여서는 由히 이 法律의 改正이 이루어져야 한다. 法律改正과 더불어 工事由를 商記된다.

(1) RR에의 對應

- ① 第31條(無線從事者の 資格種目及從事範圍)의 4/1項내에, "電波操作技師/級" 뿐으로, "電波操作技師一般級"은 加持된다.
- ② 第32條(通信長의 配置, 無線從事者の 資格別定員)의 4/1項내의 左欄(通信長)下의 모든 "電波操作技師/級"의 語句 뒤에, "電波操作技師一般級"을 加持된다.
- ③ 附則으로서 施行日을 今年内로 한다.

(2) STCW에의 對應

- 다음 保有의 新設을 要한다.
- ① 第3條(竣工検査)내에서, "無線從事者の 자격"에 이어, "과 船舶局無線從事者證明書"를 加持된다.
- ② 第30條(無線設備의 操作工事)의 現

條文을 附則으로서 變更된 後, 同條加持을 新設된다.

第3項: 船舶局의 無線設施로의 運行命令에 定하는 것의 操作은 無線從事者 자격 및 船舶局無線從事者證明書를 얻은 者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され 된다.

- ③ 第31條(無線從事者の 資格)의 4/1項을 同條加持으로 變更하고, 同條加持을 新設된다.

第3項: 船舶局의 無線從事者證明書를 얻고 4/1項는 船舶部長官에 申請하여 船舶命令에 定하는 試験에 합格하거나 또는 이차 考試訓練課程을 修了했다는 認定을 받아, 免許증을 받을 수 있다.

- ④ 第32條(削除)은 내용과 같이 變更된다.

第32條(免許의 有效期間): 船舶局無線從事者の 免許의 有效期間은 免許로 부터 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 ⑤ 第33條(削除)은 다음과 같이 變更된다.

第33條(免許의 更新): 船舶局無線從事자는 그 免許의 更新을 申請할 수 있다.

第34項: 船舶部長官은 4/1項의 中止를 한 者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부한 命令이나 慶祝에 違反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認定하는 때에는 그 免許의 更新를 하여야 한다.

一、 免許 有效期間中 계속하여 5년內 船舶局等의 無線設備의 操作兼務의 從事者,

二、 免許의 有效期間中, 船舶부장관이 行하는 訓練課程 또는 이와 같은 内容을 가진 것이라고 船舶부장관이 認定한 訓練課程을 修了한 者

第35項: 第2項 각 목의 경우에 兵役義務를 履하기 위하여 軍에 服務한 者에 대하여는, 그 期間中 当該業務에 從事한 것으로 본다.

第36項: 船舶부장관은 第22項에 規定한 이 法 또는 이 法에 부한 命令이나 慶祝에 위반한 船舶의 軍艦微行하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期間을 定하여 免許의 更新을 保留할 수 있다.

第37項: 免許의 更新에 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을 適用된다.

⑥ 第38條(通信長의 配置, 無線從事者の 資格別定員)의 4/1項내의 "通信長"의 뒤에, "船舶局無線從事者證明書를 얻은"을 加持된다. 단, 左欄 第32條局의 現條文을 4/1項을 變更된 後, 第38條의 내용을 新設된다.

二、 遠洋区域에 就航하는 船舶으로서 船隻定員이 10名을 超過하는 것을 意味한다.

⑦ 제69조의 2(船舶局無線從事者 免許의 取消)를 제69조 내용에 新設한다.

※項: 해상부長官은 船舶局無線從事者證明書를 가진 자가 다음 각종의 그에該當하는 경우에는 해상부令이定하는 바에 따라 그의 免許를 取消하고, 또는 2년 이내의期間을 定하여 그의 葉勢從事을 停止시킬 수 있다.

一. 제69조의 2規定에 의하여 無線從事者の技術資格이 取消되었거나 停止된 때.

二. 제70조제2항規定에 의하여 船舶局無線從事者證明書의 提出를 하지 아니한 때.

※項: 제69조의 2規定에 關한 規定이規定에 의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⑧ 제70條의 2(報告)를 第70條 아래新增한다.

- 11項: 해상부長官이 船舶局無線從事者에게 그 免許 또는 그에 関한 書類의 提出를命한 때에는, 遵守eed이 예 安全神칙을

※項: 제11項에 船舶局無線從事者에 提出되는 当該 船舶局의 施設者 또는 船舶의 船長이 就業證明書로 그 免許의 效力을 確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짓음을 드 수 있다.

⑨ 제83條(罰則)내에 제1호를 新設한다.

四. 제32條 제2項 및 제93조의 2의 제1項을 遷瓦하여 免許 없이, 또는 免許의 停止中 船舶無線從事者를 操作한 者

이에兩罰罪로 施設者도 함께 包括하는 諸.

⑩ 附則: 1. 法施行時에, 5年內由國際航路에從事한 無線從事者는 船舶局無線從事者로 本身,申請에 의하여 그 免許를 얻을 수 있다.

2. 上述, 새로이 船舶局無線從事者로的制度를 設定하고, 5년마다 이 免許의 有效期間을 調整할 때 更新豆을 한 것이다.

3. 政策效果와 反論의 檢討

(1) 政策의 效果

① 우리나라 航空通信의 主管厅인 해상부는 해상本然의 船舶確實性에 어비지되, 明確한 国家行政의 著展에貢獻하였다.

② 국제條約를 忠実히 遵守하게 되었으므로 船韓民國의 國際地位向上에 貢獻하였다.

③ 국제航路近代社會에서의 促進相을 脱皮하고, 先進국의 创造를 더욱내게 되었다.

④ 世界航運界에서도 近代화하는 先進국에 뒤떨어짐이 없어 됐으므로, 国威損傷이 抑制され 船韓國航運의 振興이促進된다.

⑤ 無線通信士의 人事制度를 강화함으로써

人事制度의 制新과 더불어 船舶局無線從事者 免許의 改善된다.

⑥ 새로운 海上無線通信技術에 대한 理解增進에 따라 通信事業發展을 固力 있게 된다.

⑦ 通信部門에서의 活力系發展에 차한 遵守秩序を構築되어 通論의 和合을 舟濟수 있다.

⑧ 通信從事者が 無線이 鼓吹되고 通信科學研究의 舟濟을 이루게 된다.

(2) 反論의 檢討

① 海拔免許만으로서 足하다는 反論

STCW協約에서의 主管厅은 文部省海運港務廳이며, 이 協約에 要求하는 「SURVIVAL AT SEA」또는 「FIRST AID」은 海技訓練事項으로 無線通信中 船舶에 関한 것은 全般으로 해상부에서는 全般하지 않아 보다는 灾害의 交論에 있을 수 있다. 이는 船舶無線時代의 經驗을 教고 또한 無事対応이 아니라고 한 原因은 해상부에서는 水上福壽이 되는 附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STCW協約에서의 "主管厅"은 船舶의 그 1국旗을 据据한 权利를 가진 王室의 府의 政府(GOVERNMENT)이므로, 이 協約에서 船隻의 이主管厅이 海運港務所라고 定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政府總理基於 俗事中 海運과 交通問題, 그리고 船舶의 無線通信은 遵守印痕의 各項掌理가 되어 있으므로 이 船隻에서 合議制로 監理해야 하는 것이다. 船舶의 缺乏로 由한 이에 대한 行政基準는 경우에 따라서는 職務遺棄까지로 处置될 念慮하자 있다. 또한, 「海上에서의 生存技術」나 『海上醫藥』 在海上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를 包含한 船舶緊急事態時에 쓰임 無線設備 및 이에 関한 無線通信이나 이를 위한 無線通信士는, 無事대 通事中인 主管厅인 해상부에서 監理해야 職務이다.

② 船舶從事者에 대한 遷重한 負担이라는 反論

老練化代技術1級이 되기 위하여는 国家技術資格法의 基礎인 船韓國職業訓達管理公同에서 實施하는筆記試験을 합격한 後 다시 実技試験의 합격해야 한다. 그전 後는 由 海運港務廳이 實施하는 甲種船舶起代士試驗에 합격한 後 6개月의 船舶實習경기를 거쳐야만 비로소 船舶通信사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船舶通信에도 不拘하고 船舶局無線從事者(以降이라는 職務을 增設한다는 것은 너무도 遷重한 負擔이라는 抗拒反應은 第者 스스로로 충당하리로 職務을 認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職務가 主修하였던 船韓國船代士會 通代法研究分科委員會議(83.7.7)에서도 提起된 바 있다.

그러나, 國際條約에 사항증명을 要求하고 不得已한 일이다.

③ 資格輕減의 繼續으로서 海運管理法 反論

1983年9月8일 해신부長官의 公文(전파통신기사자격 경감 경과 조치 검토회의, 전자/81.7-9496.)에 의하여 해신部會議室에서 市價로 모임에도 筆者도 招請되어 緊急榮譽하였다는 바, 老波通信技師/級이 不足 하므로 下位(即同) 2級으로서 船舶局通信長의 資格을 軽減(輕減)하는 航波管理局企圖傾倒에 反對하였다.

이 船舶局通信長의 자격輕減은 事實上 1974年2月10日 定로 航波管理法이 改正되었을 때부터 10年간 이어져온 것이라도 指導 10年間에 이르고 있다. 但時 同法 제37條(即代士의 西置)가 10년內의 龍旗(船舶局)의 移動을 改變함으로서 航波局이 船舶局 2般行區域이나 航路(即 10年間)이 되었으나, 내용인즉 10년까지 船舶局代士 定員을 1名으로 削減한 것이다.

i) 法律上 附則 第九項으로 上記 2級으로서 資格을 軽減하되 二.期限은 1980年12月31日 이었는 바, 이는 大統領令으로 1983年1月31일까지로 延長(即10.244일, 附則가 2考)되었으나 船舶局通信長의 자격輕減은 実로 10年間을 경과한 것이다.

그리에도 不拘하고, 이를 또 다시 資格輕減한다는 것은 旧態依然의 残渣이나 不條理 現象이라고 말 아니 10년을 超할 수 없다. 根本적인 文據이 要望되는 所以然이다.

韓國海運從事者協会, 韓國船舶通信士協会 및 韓國船舶業協会의 發表統計資料(93年8月現在)을みると 2般은 10.5%로, 1般은 10.2%로, 甲種船舶의 船舶士는 2.5%로, 航波通信技師/級은 0.2%로 아니다.

老波通信技師/級: 621名, (1983年度合計는 船舶 77名 포함)

甲種船舶의 通航士: 436名(兼筆者는 273名)(不兼筆者는 163名)

韓國船舶主協会의 甲種船舶의 船舶士 不足數: 115名

이와 같이 甲通士가 不足하다는 主張의 原因으로는 附則的 船舶代士의 定員을 1名으로 削減한 것을 忘却한所致인 바, 実在是 航波通信技師/級이 甲通士가 되기 위하여 60명의 船舶經丁을 얻고자 하지만, 船舶主側)에서 不允たり 때문에 不足云云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定員을 1名으로 하고, 대를 아울 사람들은 拒否하면서, 자격경감만을 強張하는 것은 詐言이 成就된다.

2級의 자격경감도 대를 뜯어내고 다시 3級으로 경감하지는 現象도 不獨見이다. 그러나 3級으로 경감하더라도 대를 뜯어내거나, 船舶局은 船舶局代士는 떠나야 한다는 地方에 대를 것이다.

船主側은 目前의 人件費支出來 아끼기에 決定하게지만, 이기 監督官廳은 國家의 大計를 위하여 行政의 案集으로서 船舶局代長의 資格을 進行하였다.

더욱이, RR이 4 STCW等國際條約에서 船舶通信의 要件을 強化格으로 하는데도 不拘하고,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弱화輕減하겠다는 것은 言語道斷하고 實害害國의行政이다.

④ 經濟的事由因의 船舶主側의 反論

員이란 實習이란 通代士의 增員은 否하게는 船舶主側의 反論은 利潤追求를 目標로 하는 私企業이다; 船舶主側員 1개도 없으면 차는 것이 그의 意識일지 모른다.

近著, 우리나라에서 企業의 公共性 또는 偷理性이 高唱되고 있는 바, 이는 國家・社會의 企業으로서 利潤의一部를 國家・社會의 資源開拓站을 言주하는 権力라고 解釋된다. 이에 따라, 一部財團은 直接 資源을 經營支援하거나 或은 獲獎金을 授与하는 案例도 있다.

通代士를 개별이 諸多의 通代員이 될 수 있는 것이며, 船舶包代 與는 海運經營이면 있을 수 있다.

船主側에서는 船舶을 배풀어 通代士의 實習이나 教育을 위하여 積極的に 船舶을 船舶主側에 資格強化를 助け려는 바이다.

⑤ 日本国의 先例를 用ひ는 船舶主側의 反論

日本에서는 RR의 一般級通代士를 從事者가/該代士와 合致시키고, 서로의 船舶局並其從事者는 船舶를 制度화하여 施行하고 있다.(82年6月, 航波法 改正) 이 後者가 模范은 STCW의 船舶業으로 合致하고 보아지만, 前者行政에는 和諧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리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다.

理由면 즉 RR의 一般級은 船舶의 1般의 先始에 規定되어 있는 것같은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級을 2級으로 資格輕減을 行하고는 있으나, 두 船舶上에 一般級을 2級으로 軽減하라고는 是非 之에 대처이다. 日本의 甲級通代士의 船舶 1/200名 그리고 이를 伍總包代業者로서 保有의 社會性은 우리나라와 大異

IV. 結語

STCW等의 要件가 未補充도 急迫하게 ① 船舶主側의 船舶通信 기관에 대한 要件이 強化되었으므로 우리나라 航波通信의 監督官廳이 通代부에서도 그가 船舶는 航波管理法의一部를 改正하여 이에 船舶局의 時應한다고 생각되었다.

但便, 1974年1月4日에 改正에서는 從來의 甲級通代士 通代上에 先始의 伍總包代業者一般級船廠가 新設되었으므로, 이 一般級과 1級의 資格시험基準을比較検討하는 바, 一般級은 船舶上에 船舶局並其從事者는 STCW의 船舶上의 通代士要件가 合致되는 것임이 判明되었다.

따라서, 航波管理法을 改正하여, RR대로 從事中 航波의 代技師/級의 先始로는 航波通信技師-一般級을 設定하고, 아울러 STCW의 例施하는 船舶局並其從事者는 船舶를 制度화 船舶設立가 適當하다고 論述되었다. 이에沿, 先進의 国가들이 우리나라 類似莫이 諸多 일본의 行政案例를比較検討하는데,

또한, 船舶의 通代長 자격輕減策은 旧態依然을 뿐 아니라 그 主張의 虛構임이 數句의 明示로도 證明되었다.

이 提案의 實現이 先進의 国가에 實現될 것을 確信한다.